

202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완주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잘되는 날도 있고,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 않는 날도 있고,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순간도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날을 지나 오늘 시험장에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까지, 길고 치열했던 여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자신의 합격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한 문제를 잘못 썼다고 생각될 때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할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쏟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제가 생각하는 **완주**입니다.

이제 올해 여러분이 해야 할 완주는 끝났습니다. 결과는 열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공부한 것을 최대한 쏟아내고 오셨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만큼은 끝까지 **해낸 스스로를 먼저 다독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강사님들이 시험이 끝나면 ‘결과는 잠시 내려놓고 쉬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험이 끝난 뒤 2주 정도는 계속 수험카페를 들락날락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합격할 수 있을지 가늠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끝났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답안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의 답안과 비교하게 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답안을 계속 들여다본다고 오늘의 시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시험에서 마음을 떼어놓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의 시험이 우리의 완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합격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진짜 완주니까요.

[2026년 노동법 출제경향 분석]

❖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과, 쓰기 쉬운 시험이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올해 출제된 주제들은 모두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LIST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A급 쟁점들로, 출제된 쟁점 자체의 난도는 비교적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올해 쉬웠으니 내년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여 공부범위를 무작정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예측하기보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듯,

- ① 물음에서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하고,
- ② 필요한 일반론을 충실하게 작성하며,
- ③ 판례의 구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 ④ 이를 사안에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은 여전히 노동법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고판, 치환형, 요건형, 요소열거형, 키워드형 등 판례의 구조를 구분하여 공부하도록 강조했던 것도 결국 이러한 이유입니다.

오히려 2027년을 준비한다면 다시 이 기본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 합격을 위한 노동법 완주전략]

1. 범위를 무작정 늘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 합격에 필요한 범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에는 기타법령이나 최신판례에서 직접적인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출제경향 때문에 2027년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해당 범위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법령이 향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을 고려하되, 그렇다고 공부범위와 양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같이 근로기준법·기단법·파견법·산재법·노조법을 중심으로 충분한 실력을 확보하고, 기타법령은 최소한

- ① 관련 법조문
- ② 최근 3개년 주요 판례
- ③ 정책적·시의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쟁점

정도를 선별하여 가져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인 합격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쟁점을 모두 100만큼 아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쟁점도 시험장에서 제대로 현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핵심범위를 충분히 깊게 가져가고, 그 밖의 범위도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수험생보다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2. 일반론은 '외웠다'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일반론은 단순히 키워드 몇 개를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한 경우 충분히 디테일하게 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문제의 배점과 중요도에 따라

10을 준비하고 → 7로 쓸 수도 있고 → 5로 줄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노동법은 결국 시험 직전까지 방대한 범위를 반복하여 가져가야 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시험 직전의 마지막 1회독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범위와 현출 수준이 실제 시험장에서의 답안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똑같은 수준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를 나누고 → 구조를 만들고 → 반복하고 → 압축하고 → 다시 현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줌 라이브 대신 노동법 답안 진단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줌 라이브를 대신하여 9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노동법 답안 진단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올해 답안을 맞춰보는 시간이 아니라,

- ✓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 ✓ 알았는데 왜 쓰지 못했는지,
- ✓ 썼는데 왜 점수가 나오지 않는지를 진단하고,
- ✓ 다음 완주에서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찾는 시간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35회 출제 분석] 1교시

1-1문(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GS2기 1회차 1문 출제

1-2문(임금직접지급): 쟁점리스트 강조

2문(경영상해고 통상해고 구분): GS 3기 3회차 1문 출제

 2교시

1-1문(실질적 공정대표의무): GS 2기 5회차 1문 출제

1-2문(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GS 3기 1회차 2문 출제

2문(조합활동 정당성): GS 3기 1회차 3문 출제

 [3기 4회차 추가자료 쟁점리스트]

2026년 GS3기 4회차 목차연습 추가자료

김소희 노무사

	개별법		노조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플랫폼, 택시)/헬스트레이너	★1	설립무효(+평화 의무)
★2	위약예정	★2	공정대표의무
★3	통상임금	★3	쟁의행위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복수목적)
4	포괄임금제	★4	유니온숍
★5	취업규칙	★5	조합활동의 정당성
★6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6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7	전보	★7	지배개입부노(개별교섭)
★8	경영상해고	★8	협약체결권한 제한
★9	임금성 판단	★9	성실교섭의무와 부노
10	근로시간	★10	불이익취급 부노(인사고과)
11	연차휴가	11	형사책임
★12	징계절차(소명기회, 재심, 이중징계, 합의조항)	12	단체협약 주요조항
★13	영업양도	★1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4	부당해고 구제파트	14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15	상시근로자수	★15	직장점거(+직장폐쇄)
16	차별	16	조직형태변경
17	시용	17	준법투쟁
★18	직위해제	★18	부노주체(사용자성)
	파견(직고의무)	19	태업
	기단파 차별	20	근로시간면제자
	산재법 제3자		
	산업안전보건 의무	불의타	협약자치의 한계(자체 쟁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불의타	도급사업과 임금지급(차별불원, 직장수급인, 고의)		최판-현대중공업
	임금지급 4대원칙		노사협의회